



LPG 판매시설 검사업무 처리 지침

이용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부실시공의 근원적 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PG충전시설, LPG저장시설, LPG판매시설, LPG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규정과 LPG기술검토처리지침 등 시공과 관련된 표준이 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가스시공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제반 지침들을 올해의 시공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가스시공업체가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재중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7-1-4조의 규정에 의하여 LPG판매시설의 검사에 관한 세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검토
2. 안전성확인 및 완성·정기검사

제3조 [정의] “불연성재료”라 함은 콘크리트·석재·벽돌·슬레이트·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다만, 철판 사이에 가연성의 스티로폴 등을 조합시킨 것(샌드위치판넬, 인슈판넬 등)을 제외한다.

제2장 기술검토 및 안전성확인

제4조 [적용공정] 안전성확인 실시공정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보관실 방호벽의 기초 설치 공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 설치 공정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시공사항
 - 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높이·폭 및 뒤메우기 깊이
 - 나. 앵커볼트의 규격(길이, 직경 및 허용차), 기초에 묻는 높이 및 벽면과의 이격거리

다. 용기보관실 바닥 두께

라. 보강철판 설치여부 및 두께(중간검사시 확인 이 불가할 경우에는 완성검사시 확인)

2. 용기보관실 방호벽(강판제 방호벽 제외) 몸체 설치공정 중 다음 각목의 시공사항(방호벽 종류에 따른 해당사항에 한함)

가. 벽 두께

나. 철근의 두께·배근간격 및 모서리 부분의 결속방법

다. 보조벽 설치의 경우 보조벽의 배치방법

라. 블록 공동부의 몰탈 채움상태

3. 용기보관실의 지주 설치공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 설치공정을 포함하며, 지주를 기초에 묻을 경우에 한함) 중 지주의 규격(길이, 두께 및 폭) 및 기초에 묻는 깊이를 확인한다.

제5조 [용기보관실 설치방법] 용기보관실의 세부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보관실을 전용으로 신축할 경우의 설치방법은 별표4와 같고, 최초 타 용도로 허가된 기존 건축물 내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경우의 용기보관실 설치방법은 별표5와 같다.
2. 용기보관실을 제1호의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실시한다.
3. 고압가스 운반기준(고법 통합고시 제9장 제3절 제2조)과 용기보관실 바닥높이 상향 설치시의 상호 법령 적용 관계는 별표6과 같다.

제6조 [강판제 방호벽의 설치방법]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판의 허용오차(KS D 3500)는 다음 표와 같다.
2. 강판과 강판의 용접방법은 100% 맞대기 전면(全

〈표〉 강판의 허용오차

[단위:mm]

강판의 종류	허용오차
6t	±0.6
3.2t	±0.34

面)용접으로 시공하고, 강판과 앵글강 및 지주와의 용접방법은 100% 전면(全面)용접으로 시공토록 하되, 2개 이상의 용기보관실을 인접설치할 경우 경계벽으로 공동사용하는 부분의 방호벽은 내·외부 양면을 100% 전면용접으로 시공토록 하고, 지주는 방호벽의 내·외부에 2중으로 설치토록 할 것.

※ 3.2mm 강판 사용시 강판과 강판 및 앵글강의 결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두께 6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토록 유도할 것.

- 제7조 (용기보관실 면적 및 시공자 확인)** ① 용기보관실의 면적, 방호벽 및 지주의 두께·치수 등은 안전성확인 단계에서 확인하여 부적합시에는 안전성확인을 부적합처리한다.(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
- ② LPG시설 기술검토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검사 부적합처리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통보한다.
-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 및 건설기술자의 적정여부는 안전성확인시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확인방법은 “LPG 충전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이하 “충전시설 지침”이라 함)” 별표5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안전성확인 신청)

- ① 안전성확인은 완성검사 신청시 1건으로 신청토록 하고, 매 공정 단계마다 신청인이 입회를 요청

(유선 등)케 하여 실시한다.

- ② 안전성확인수수료는 1건에 대한 것만을 징수하며, 안전성확인의 재검사는 유선으로 신청케 할 수 있다.(유선 신청시에는 재검사신청서를 지역본부(지사)에서 작성하여 수납실에 접수)

제9조(건축물의 최초용도 확인) ① 건축물의 최초용도가 가스판매소(위험물저장소)인 건물을 이미 완공한 상태에서 기술검토 신청시에는 건축허가(신고)증사본을 징구, 용도를 확인하며 최초용도가 가스판매소(위험물저장소)인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기술검토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반려사유 :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는 용기보관실 방호벽의 기초에 대한 검사 불가)

- ② 건축물의 최초용도가 타 용도로 허가(신고)된 것을 용기보관실로 변경, 사용코자 기술검토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징구하여 가스판매소(위험물저장소)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 후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만 사용을 인정하여야 한다.(최초용도가 “가스판매소→타 용도→가스판매소”로 용도변경된 것은 인정 금지)
- ③ 제2항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가스판매소로 용도변경된 것은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을 강판제로 할 경우에만 사용을 인정하고, 강판제 방호벽 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와 같이 기술검토신청 서류를 반려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된 용기보관실의 강판제 방호벽의 기초는 고시 제2-2-4조 제6호의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10조 [완공도면 등의 청구] ① 완성검사의 시공내용이 기술검토 도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시공내용을 표시한 완공도면을 청구한다.

② 완성검사의 LPG시설 기술검토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기술검토(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시에는 완공도면에 그 변경내용이 표시되도록 한 후 그 변경내용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완공도면 청구시에는 완공도면과 실제 시공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면내용이 시공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시공자)에게 보완을 요구(공문 또는 구두)하여 수정·보완된 완공도면을 청구후 완성검사를 처리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검사원이 직접 기술검토 도면을 수정한 후 처리할 수 있다.(수정일자, 수정인 성명 날인 및 수정사유 명기)

④ 중간·완성검사에 검사신청인(시공자)으로부터 청구하거나,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대상 서류

가. 허가증 사본(허가관청으로부터 미 통보시에 한함)

나. 시공자 관련서류(시공업등록증 사본,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다. 종류별 완공도면 (시공내용 변경시에 한함)

2. 현장확인 서류(청구대상에서는 제외)

가. 방폭전기기기 검정 합격증 사본

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정기교육 이수증 사본 (미 이수의 경우에는 이수 제도)

제11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 구분]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용기보관실과 사무실 사이에는 불연성재료로 칸막이를 설치하며, 틈새가 없는 밀폐구조로 하여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12조 [환기구 통풍면적 계산 및 위치] ① 자연통풍구조로 설치된 용기보관실의 환기구 통풍면적 산정 방법은 충전시설 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용기보관실의 환기구를 자연통풍구조로 설치할 경우 환기구의 위치는 외기와의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용기보관실과 타 건축물과의 사이에 상부가 막혀 있어 통풍이 잘되지 않는 위치에 환기구 설치 불용)

제13조 [기존 용기보관실의 재사용시 검사방법] 고압가스판매사업을 LPG판매사업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LPG판매소 공동화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폐업이 되어 사용하지 않던 용기보관실을 신규허가시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한다.

1. 1993년 6월 26일 이후 현행 고시 규정에 적합토록 완성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산기록 또는 검사기록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초설치 공정, 앵커볼트 설치공정 및 지주 설치공정(지주를 기초에 묻는 공정에 한함)에 대한 안전성확인을 생략하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현행 기준(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의 면적 등)에 적합할 경우 재사용토록 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작성하는 기술검토 서류에는 기존 용기

보관실을 재사용한다는 내용과 기존 시설의 완성 검사일자를 표기토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생략(감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신규 적용부분은 시설기준 내용을 새로이 작성토록 계도한다.(기술검토 결과 회신용 기술검토결과표에는 재사용부분 및 신규설치 부분을 구분 표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완성검사 처리시 기존의 검사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검사기록에 합철하고, 기존의 검사기록(도면 등) 유·무와 관계없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부분의 도면은 신규 작성하여 기술검토 신청서류에 첨부되도록 한다.

제14조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공동사용 여부] 동일 부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 또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의 공동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기술검토시 적용)

1. LPG와 다른 가연성가스는 허가 관계 법령이 다르므로 동일 용기보관실 내에 저장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에서 동일 용기보관실 내의 혼합저장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산자부 인터넷 질의회신 2000. 7. 6일)
2. 2 이상의 사업자가 최초부터 고압가스 및 LPG 판매사업 허가를 각각 받고자 하는 경우의 사무실은 허가 관계 법령이 다르므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에서 공동사용을 인정시에는 제외한다.(산자부 질의회신 2001. 4. 10일)
3. 하나의 사업자가 고압가스와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공동사용(사무실 면적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것 중 큰 것 이상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사무실을 공동

사용 도중 사업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자로 분할된 경우에도 허가관청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의 공동사용을 인정한다.

제15조 [용기보관실 출입문의 구조 등] ① 용기보관실에는 방호벽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출입문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법령에 규정한 최소 면적(19㎡)보다 크게 함으로써, 1개소의 출입문으로는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19㎡당 1개소의 비율로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출입문 방향은 안전한 작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입문의 가로길이는 1,800m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양 끝단에는 강판제방호벽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주를 설치(강판제방호벽에 한함)하여야 한다.

③ 용기보관실 출입문의 세로길이가 2,000mm 미만일 경우 출입문 상부는 방호벽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용기보관실 출입문은 미닫이식 및 여닫이식의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으나, 여닫이식의 경우에는 출입문이 용기보관실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반차량 구조확인] 완성·정기검사 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통합고시 제9-3-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차량 적재함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영업소의 기술검토] 영업소 설치를 위한 기술검토를 우리공사에 요청시 시설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제18조 [정기검사 사전안내] ① 정기검사(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포함) 시기가 도래되는 업소에는 정기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1의 안내문이 업소에 도착될 수 있도록 매일 초에 일괄 발송하거나, 월 2회에 걸쳐 분할 발송한다. 다만, 검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검사신청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일정을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안내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사전안내문 발송을 생략한다.

제19조 [위해요인 개선권고] 정기검사시 법적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외의 사항 중 별표2의 위해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표3의 서식[경미한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 개선권고 통보서(NCR용지)]에 의하여 2부를 작성, 1부는 현장에서 발급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1부는 검사표에 첨부한다.

제20조 [재검사항목] 재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부적합 처리된 항목에 대하여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 [경미지적사항 처리] 정기검사시 경미한 지적사항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미한 지적사항은 별표3의 서식 2부를 작성, 1부는 업소에 발급하여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1부는 검사표에 첨부하며 검사표 판정(적)란에 “△” 표시 후 합격처리한다. 다만, 경미 지적사항 이외의 불합격사항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 표시하여 불

합격처리한다.

② 차기 정기검사시 “△” 표시된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후 미시정시에는 불합격처리한다.

③ 경미한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표지 미설치(훼손) 및 온도계 미보유
2. 휴대용 손전등 및 차량정지목 미보유
3. 용기보관실에 가연성물질 및 불필요한 물건 방치

제22조(휴·폐지시설의 처리) 휴지 또는 폐지된 시설에 대한 처리방법은 충전시설 지침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정기검사일 산정] ①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사업소를 이전하여 용기보관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동일부지 내에서 용기보관실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의 정기검사일 산정은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산상의 검사기준일을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일로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검사표 사용] LPG 판매시설에 사용하는 검사표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완성검사표 : 액19호 검사서식
2. 정기검사표 : 액20호 검사서식(OMR)
3. 안전성확인검사표
 - 가.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 액21호 검사서식
 - 나. 콘크리트블록제 방호벽 : 액22호 검사서식
 - 다. 강판제 방호벽 : 액23호 검사서식

제25조 [보칙] ① 기술검토 및 시설검사시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며, 시설기준이 이 지침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불합격)처리한다.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이 지침에 맞지 아니하는 검사 기준 발생시에는 개정된 법령의 기준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의 개정으로, 이미 업무지시된 사항이 이 지침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 ④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안 발생으로 이 지침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서에서는 조속히 이 지침을 업무지시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0. 1. 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폐지] 다음 각 항의 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일로부터 폐지한다.

- ① LPG가스분야 검사업무에 대한 지침서(KGS98-017)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지침
 - 1. LPG판매업소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 2.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공급권역 설정에 따른 필요성 여부
 - 3. 판매업소의 정기검사 신청방법
 - 4. LPG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 5. 판매업소의 공급자 의무사항 검사 처리방법
 - 6. LPG운반차량 운전자의 용기폭발사고와 관련한 사항
 - 7.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높이가 차량적재함 높이 미달시 검사처리방법
 - 8. 판매업소의 공동화 기준 및 검사처리방법

- 9. 영업소의 기술검토 및 완성·정기검사 대상여부
- 10. 판매업소 저장실 방호벽 설치방법 개선방안
- 11. LP가스용기 안전관리강화 추진 개선방안
- ② 업무처리지침 중 기술분야의 다음 각호의 지침
 - 1. 판매 및 사용시설 중간검사지침(제2136호)
 - 2. LP가스판매시설 정기검사시 공급자의무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지침(제2185호)

부 칙 (2001. 4. 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 신청된 시설의 검사 또는 기술검토시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3. 2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착공(설치)되었거나, 기술검토 처리(신청포함)된 시설의 검사 또는 기술검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을 가벼운 지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삭제 지침 제9조, 관련근거 : 산자부 질의회신 가안 57253-475호 ('98. 8. 24)]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허가(신청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

위해요인 개선권고 사항 [제19조 관련]

구분	위해요인
시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형 가스누출검지기 미보유 • 용기보관실 내 방폭등 고장 • 운반차량에 “경계표지” 및 “적색 삼각기” 부착 불량 • 용기보관실 바닥에 고무판 미설치 • 환기구 주변에 불필요 물건 방치
운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취급시 난폭한 취급 • 비상연락망 정비 부실
기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운영관리 분야에 있어 특별히 개선을 요하는 사항



별표3

경미한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 개선권고 통보서[제19조 관련]

1. 업소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경미한 지적사항 (정기검사 항목)

번 호	지 적 사 항	비 고

3. 위해요인 개선권고사항 (정기검사 항목 외의 사항)

번 호	지 적 사 항	비 고

귀 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위와 같이 경미한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조치하여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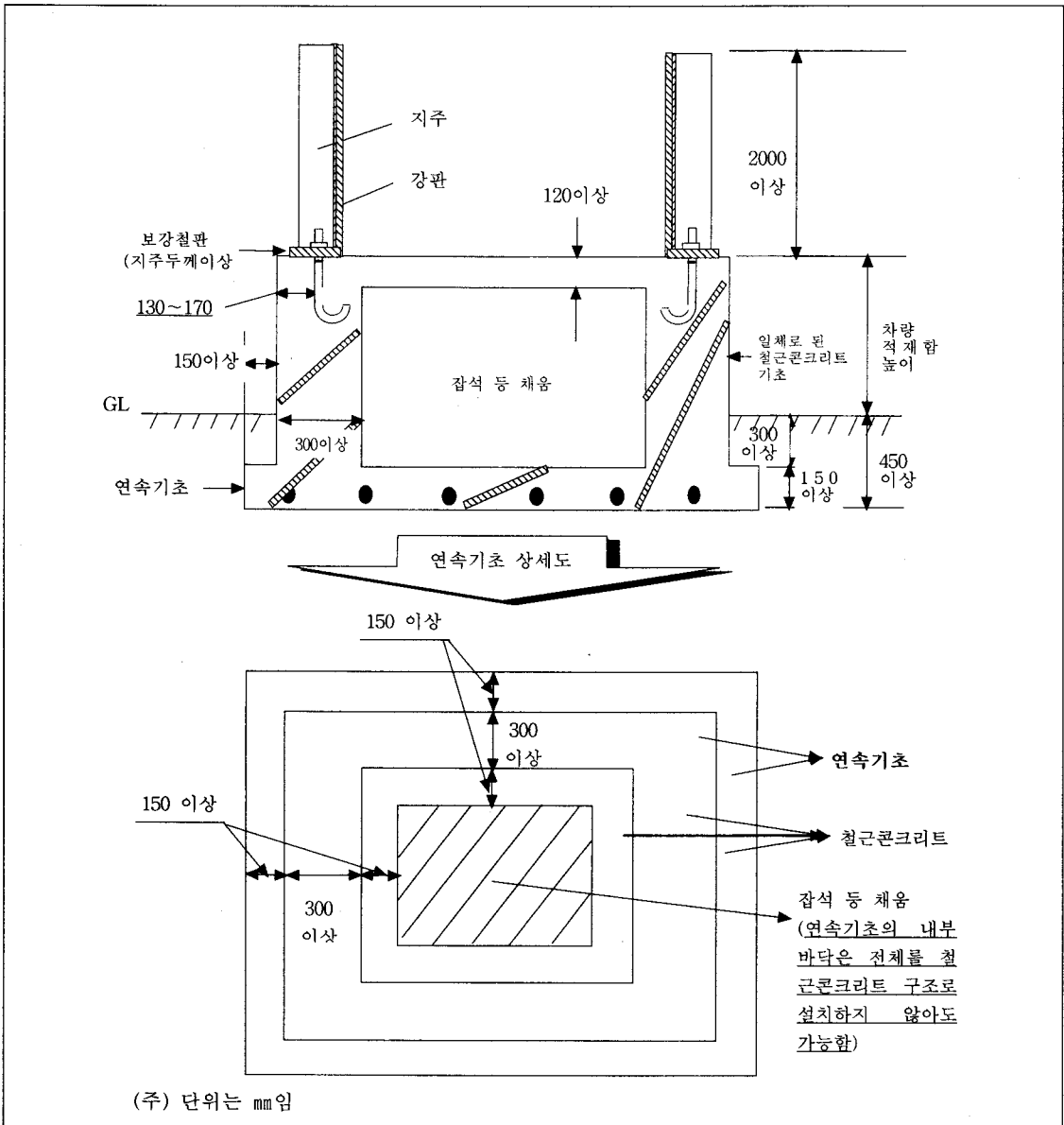
업 소 확 인	인
검사원 확 인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 ○ (지역본부장, 지사장)

별표4

용기보관실을 별도 신축시 용기보관실 설치방법(제5조 제1호 관련 (강판제 방호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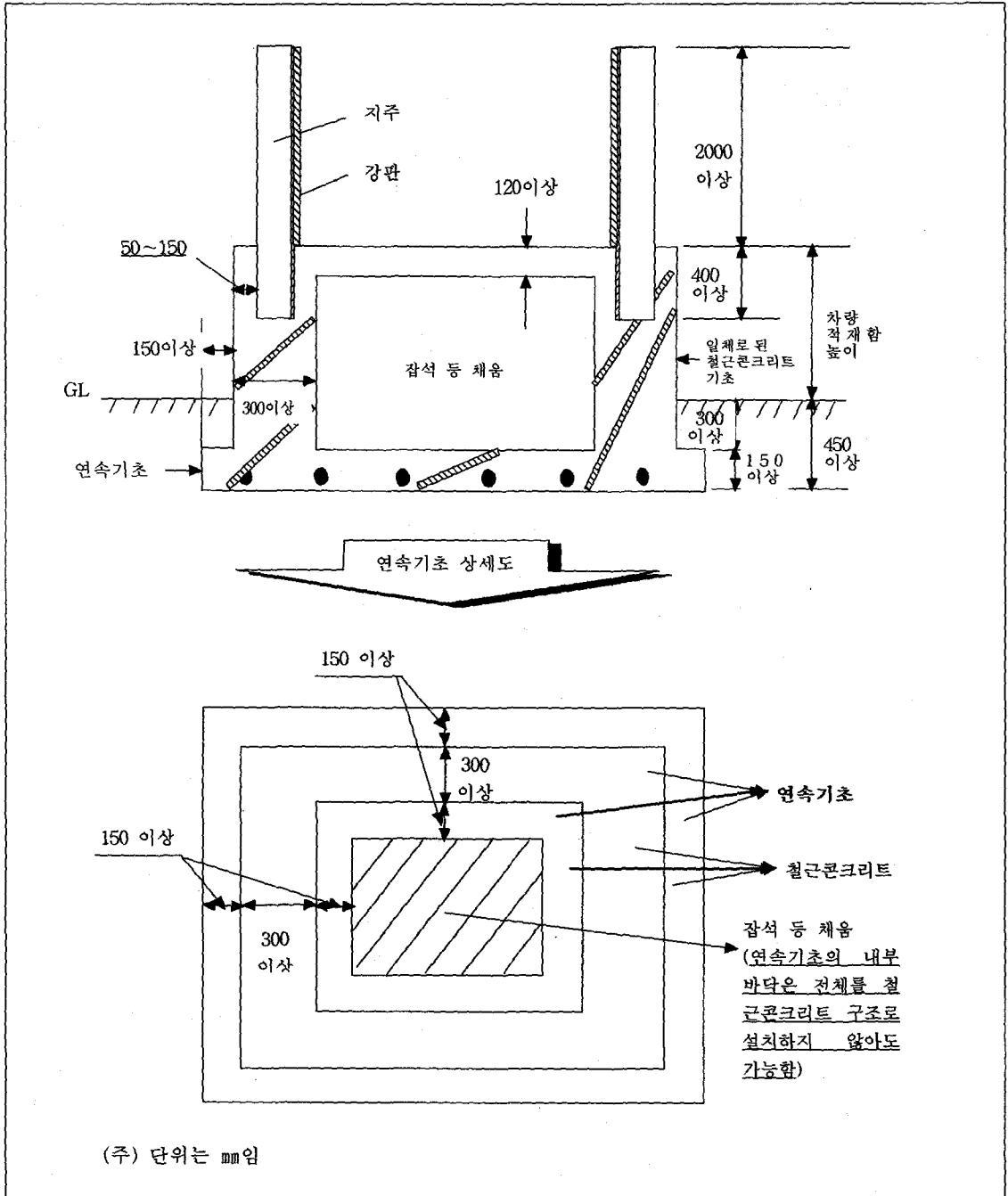
1. 지주를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구조





별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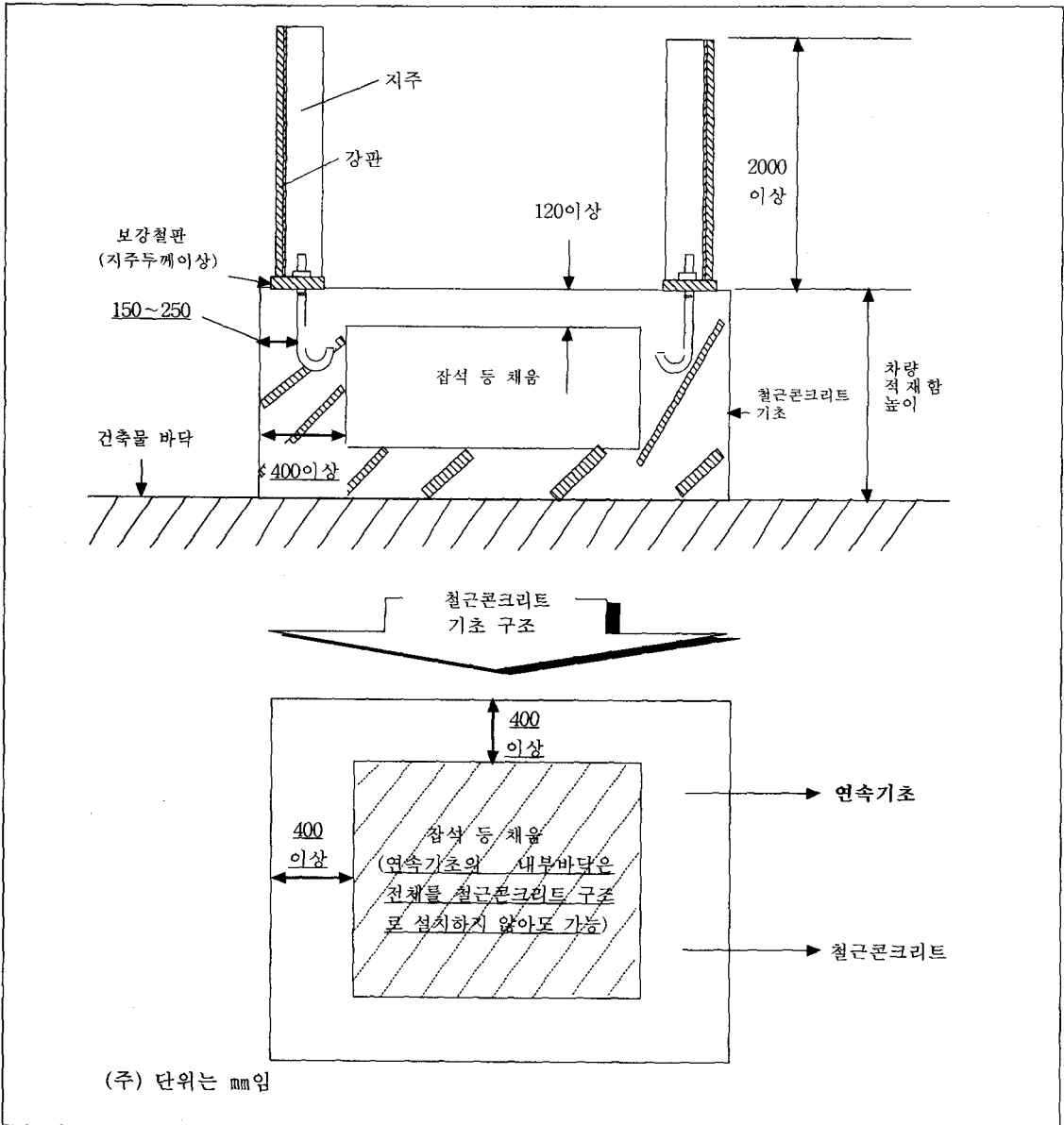
2.지주를 기초에 묻는 구조



별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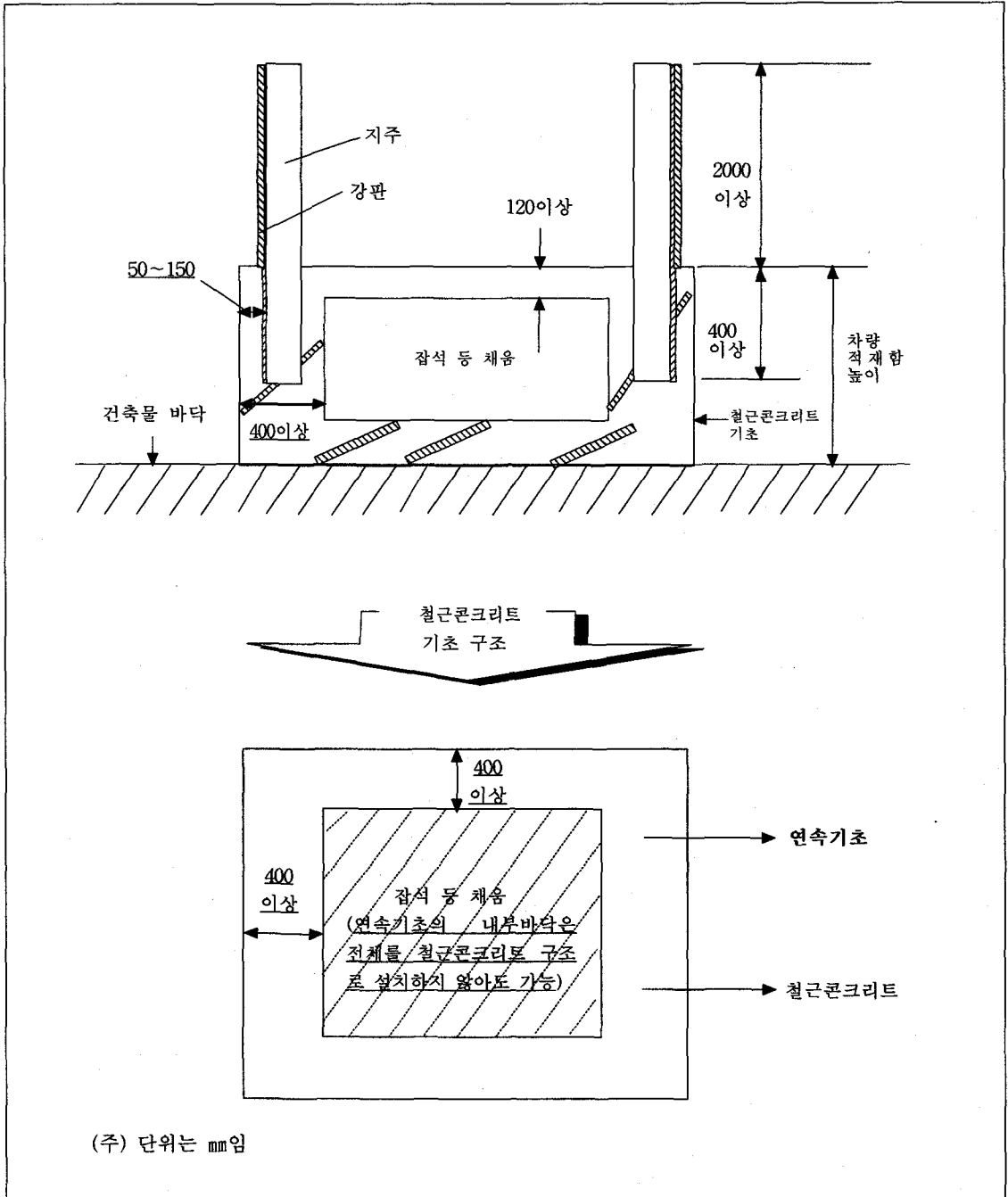
기존 건축물 내 용기보관실 설치방법[제5조 제1호 관련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상향하는 경우)]

1. 지주를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구조



별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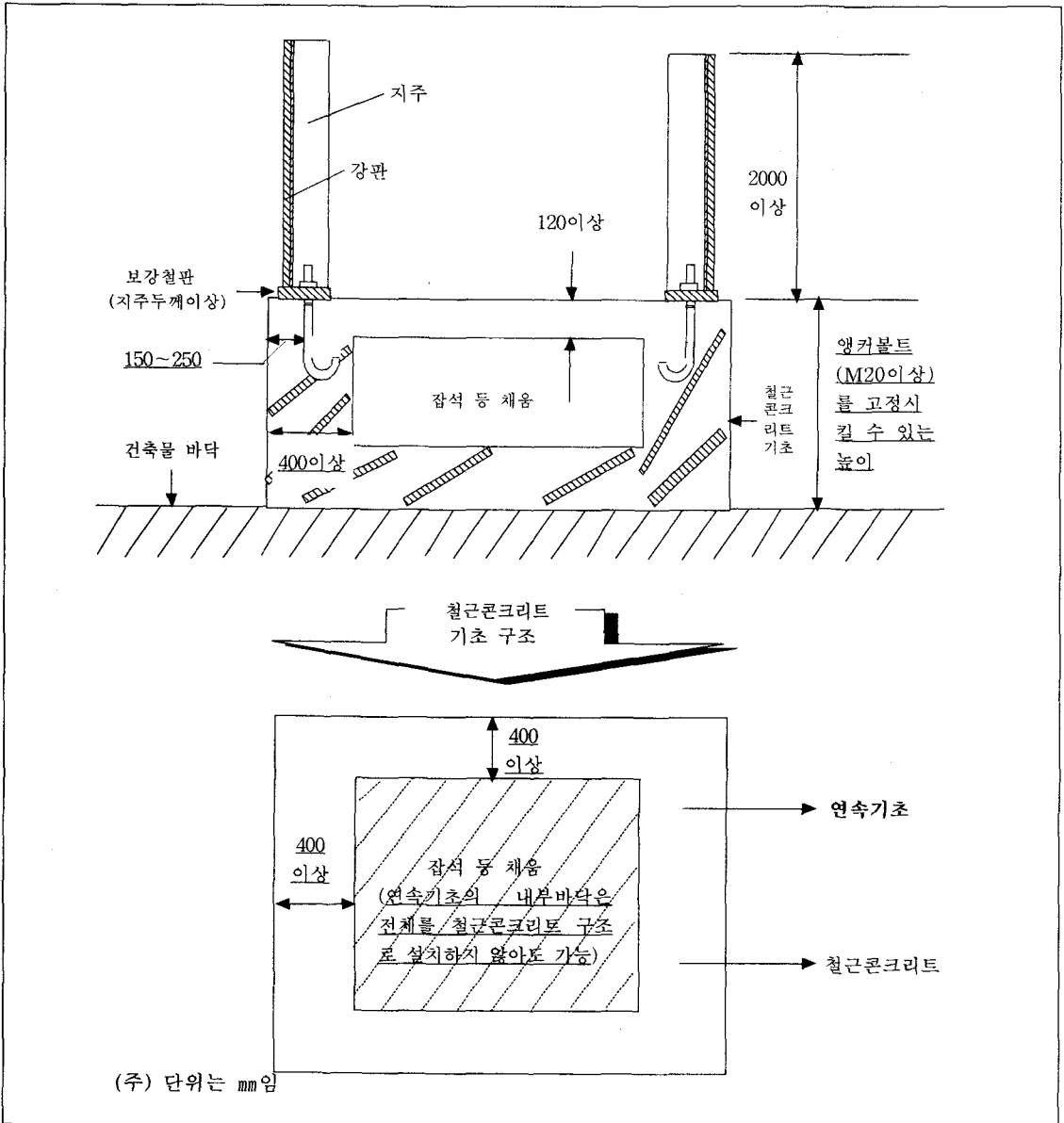
2.지주를 기초에 묻는 구조



별표6

기존 건축물 내 용기보관실 설치방법[제5조 제1호 관련 (강판제 방호벽 설치시 지주 결속부분만큼만 상향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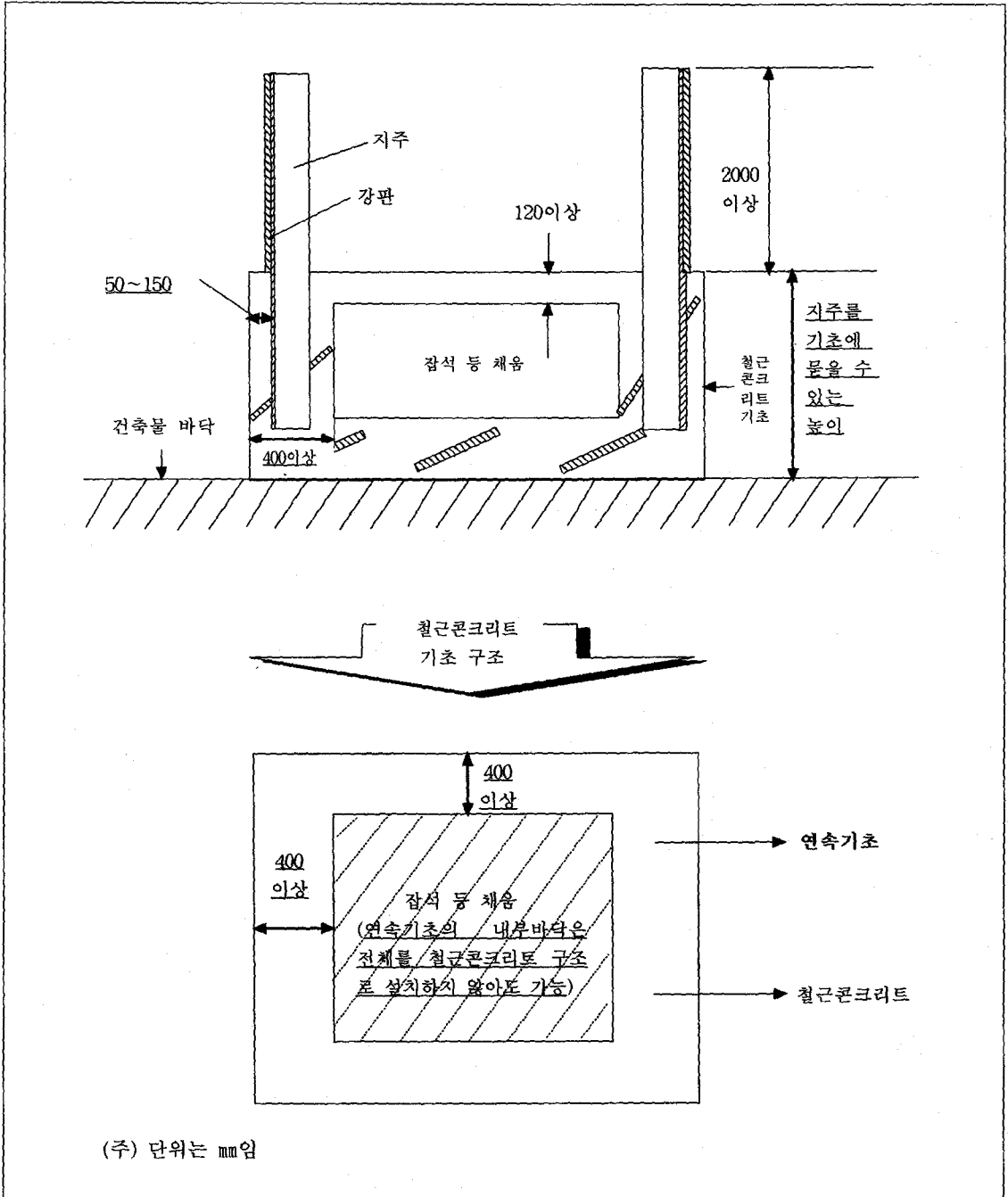
1. 지주를 기초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구조





별표6

2.지주를 기초에 묻는 구조



별표5

용기보관실 바닥높이 상향 설치기준과 고압가스운반기준과의 관계[제5조 제3호 관련]

1. 액법에서의 용기보관실 바닥높이 상향 설치 관련 기준

가. 용기보관실 바닥높이 상향 설치기준

- 관련규정 : 액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나목(2)
- 내용 : 용기보관실 바닥은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바닥을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용기보관실 바닥높이 설치예외 기준

- 관련규정 : 액법 통합고시 제2장 제7절 제2조
- 내용
 -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영업소 용기보관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전용 운반차량에 유압·공압·전기 등으로 작동하는 전용리프트(Lift)를 고정 설치하여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영업소 용기보관실에 벨트컨베이어에 의하여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내리는 설비를 고정 설치하여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이 용기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취급방법

2. 고법에서의 고압가스운반 관련 기준

가. 고압가스운반기준

- 관련규정 : 고법 통합고시 제9장 제3절 제2조
- 내용
 - (1) 가스운반전용차량의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할 충전용기 최대높이의 2/3이상까지 SS4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질(가로·세로·두께가 75×40×5mm이상인 π 형강 또는 호칭지름·두께가 50×3.2mm이상의 강관)로 적재함을 보강하여 용기 고정이 용이하도록 할 것
 - (2) 충전용기는 적재함의 구조가 1에 적합한 가스운반전용차량에 의하여 적재·운반 및 하역을 할 것. 다만,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가스를 공급받는 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이 운반차량 중 적재함 최저높이로 설치되어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 등 상·하차설비가 설치된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

(나)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

☞ 보칙(제9-3-6조) : 제9-3-2조 제3항 제4호(1)의 규정 중 적재함 보강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LPG판매시설에 적용하여야 할 용기보관실 바닥높이 상향 설치기준과 고압가스운반기준

적용항목 : 용기보관실 설치방법에 따라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리프트 및 보호가대 설치 여부

가. 용기보관실을 기존 건축물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 신축할 경우

(1) 바닥높이 상향시

고법 통합고시 제9-3-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능력 1톤 초과 차량은 리프트 및 보호가대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가스를 공급받는 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이 운반차량 중 적재함 최저높이로 설치되어 있거나, 컨베이어벨트 등 상·하차설비가 설치된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리프트 설치를 제외하며, 동고시 제9-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는 적재함 보강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바닥높이 미상향시

액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적재능력에 관계없이 리프트 및 보호가대를 설치하여야 함. 단, 고법 통합고시 제9-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는 적재함 보강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